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90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90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1. 12. 12 선고 2000나112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AA)

【피고, 피상고인】 유BA(소송대리인 변호사 장A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1. 12. 12. 선고 2000나112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 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DA이 원고로부터 금융채권시설자금 등 모두 4건의 대출을 받고 1998. 7. 25.부터 각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모두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2. 10.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모든 대출원금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대출금에 대하여 같은 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경매배당금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데, 대출금 중 금융채권시설자금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 채무가 변제이익이 가장 많으므로, 경매배당금은 이 대출원리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갑제1호증, 갑제11호증의 2, 3), 대출금원장 조CA(갑제3호증), 이자계산 내역표(갑제4호증), 여신거래 상황표(갑제6호증), 어음거래 약정서(갑제11호증의 1),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갑제16호증의 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을제3호증의 2), 대출금계산 근거표(을제3호증의 5)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출은 모두 채무자가 원리금상환을 연체할 때에는 원고 은행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미 모든 대출금이 기한이익의 상실로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이므로, 모든 대출금에 대하여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가산되고 있었고,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매배당금으로 각 대출원금에 법정변제충당을 할 경우 각 대출금에 관한 채무자의 변제이익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